

영어교육과 교육봉사활동 유의사항 (2023)

- 교육봉사활동 기간에 재학 상태여야 인정
 - 휴학, 수료 상태 시 활동은 **인정 불가**
 - 방학 중에도 가능하나 직전 학기가 반드시 재학 상태여야 인정 (휴학, 수료 중 방학은 불가)
- 영어교육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[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] 수강
 - 영어교육과는 매년 2학기에만 [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] 교과목이 개설됨
 - 조기졸업, 교환학생 등의 이유로 4학년 2학기에 수강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은 교육봉사 60시간을 미리 완료한 후 3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2학기에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도록 함. 타과 교봉이 수강은 각 학과의 사정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. 타과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교봉이가 없을 경우 학과 사무실에서도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음. 필수 과목인 교봉이 교과목을 수강하지 못해 졸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2학기 영교과 개설 교봉이를 수강하도록 함
 - 조기졸업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1학기에 타과 개설 교봉이를 수강해야 할 경우 1학기 수강 신청 전 1월까지 졸업 예정 증빙(졸업시뮬레이션 결과)을 첨부하여 학과 사무실 메일로 먼저 문의할 것 (타과 교수님 혹은 타과 사무실에 개별 문의 불가)
-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 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인정
- 대안학교의 경우, 전국 시·도교육청에서 '각종 학교'로 인가한 학교만 인정
- 반드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여야 함
 - 인정 활동: 보조교사, 부진아 지도, 방과후교사, 초등돌봄교실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,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, 교육재능기부 등 교육 기관에서 시행되는 순수 교육 목적의 무보수 교육 활동을 인정함 (예: 교과목 학습지도, 진로 및 진학, 학습, 학교 생활에 대한 멘토링,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도, 중학교 방과후 교실 지도,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도 등)
 - 인정 불가 활동: 교재 제작, 교사 업무보조, 단순 업무보조, 양로원 등 사회복지기관의 일반적 봉사, 급식 지도, 등하교 지도, 시험 감독, 야간자율학습 감독, 도서관 장서 정리 등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은 **인정 불가** (특히 서류 작성 시 이와 같은 교육 활동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)
- 비대면 교육봉사 **인정 불가**
- VMS(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) 사이트를 통한 봉사는 **인정 불가**
- 이동 시간, 사전 교육 및 준비 시간을 제외한 순수 교육봉사 시간만을 인정
 - 오리엔테이션, 사전 교육 등 **인정 불가**
- 교육봉사 시간과 본교 수업 시간이 겹칠 경우 **인정 불가** (녹화강의 수업인 경우에도 **불가**)
- 자유학기제는 권장사항이며 필수사항은 아님

영어교육과 교육봉사활동 유의사항 (2023)

- 주말 교육봉사는 지양하도록 함
- 무급을 원칙으로 함
 - 봉사 기관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을 경우 교육봉사로 인정 불가
 - 봉사기관이 실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내 교통비와 점심식대(1일 4시간 이상일 경우) 등으로 예외적으로 10,000원/일 내외의 금액을 받을 수도 있음
 - 한국장학재단 등의 실비지원프로그램은 인정 불가
- 본교의 각 교원양성기관이나 교육봉사 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실행한 활동의 경우 (예: 이화봉사단), 본교에서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. 학과 사무실에 사전 협의 필요
- 모든 서식은 반드시 “교직부”의 서식을 사용
 - 교육봉사활동 서식 : 교직부 홈페이지→실습지원자료 → 실습관련 서식 → 교육봉사활동
 - 타 서식 접수 불가
- 「사회봉사」 교과목의 사회봉사 활동 인정 내용과 중복 인정 불가
 -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 후 인정받은 교육봉사는 [사회봉사활동인증서(THE포트폴리오>비교과관리>사회봉사인증>사회봉사활동인증서(교직제출용)] 학점이수 부분에 인정받은 교과목이 표시됨(이 경우 교육봉사로 중복 인정 불가)
 - 교육봉사와 사회봉사 간 중복된 실적이 없는지 확인 후, 이중 활용의 부정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정정하여 교육봉사 실적을 최종 확정함, 최종 확정에 따라 총 60시간의 교육봉사활동 시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학생은 해당 시간만큼의 추가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해야 함
- 제출한 계획서 상의 봉사 시간과 실제 봉사 시간이 다를 경우
 - 기간이나 시간의 변동사항은 인정 가능 (별도의 추가 자료 제출 불필요)
 - 계획서 상의 봉사 내용과 실제 봉사 내용이 다른 것은 인정 불가
- 교육봉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서면 원본 제출 (방문 또는 우편으로 학과 사무실에 제출)
 - 서명 부분이 반드시 직접 서명이어야 하므로 출력 후 직접 서명할 것 (타이핑, 전자서명 등 불가)